

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007-제53 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-

제출일자 : 2007. 8. 21
발 의 자 : 탁석주의원의외 3인

1. 제안이유

- 각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간사의 직명을 변경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(간사)
 -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
 -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
 -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려는 것임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호

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.

제11조 1항, 2항, 3항의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 (<u>간사</u>) ①위원회에 <u>간사</u> 1인을 둔다</p> <p>② <u>간사</u>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</p> <p>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<u>간사</u>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</p>	<p>제11조 (<u>부위원장</u>) ①위원회에 <u>부위원장</u> 1인을 둔다</p> <p>②<u>부위원장</u>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</p> <p>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<u>부위원장</u>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</p>